

교권 보호 활동 교육 자료 (고등학생용)

1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개념

- 학생 인권 및 교권이라는 두 개념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즐거운 학교와 행복한 교육이 실현 가능
 - 교권 보호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 '교육활동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모두를 침해하는 결과
 -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및 교사의 수업을 할 권리 침해 등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수업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실현 가능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외에 전문직 종사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써 보장됨
- 학생 인권 보호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및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17.4.14 시행)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교원에 대한 위협,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수업 방해, 사이버 매체 폭력, 명예훼손 등 및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 교사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형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교사의 목소리나 행태 등에 대해 빈정거리는 행위,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교육활

동 침해 행위에 해당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선생님의 수업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과 제한도 교육활동 침해

- 예를 들어, 수업 진도 및 시험문제 난이도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요구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유형

<p>학생선도위원회 징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권고를 통한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 교육 의무화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등의 징계 가능 □ 징계는 학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진술권 부여 □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 □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p>경찰 조사 및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민사손해배상

※ 본 자료는 교권보호매뉴얼(2018.2.개정), 2019개정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전라북도교육청)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